

# 아동안전 실태와 정책과제



韓 惠 卿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책임연구원

## 1. 서 언

아동안전이란 아동이 신체적 상해가 없이 건강하게 보호되는 수준을 의미한다. 물론 넓은 의미의 아동안전이란 단순한 신체적 상해뿐 아니라 정신적, 정서적인 문제로부터도 보호되는 상태를 의미하는 것으로서 선진국의 아동안전정책은 학대받거나 방치되는 아동이 없도록 하는 아동보호까지를 포함하고 있다.

이 글에서는 협의의 아동안전 개념을 채택하여 모든 아동이 신체적 상해가 없이 건강하게 보호되어야 한다는 전제조건 하에서, 우리나라 아동이 얼마나 안전하게 보호되고 있는지 실태를 파악하고, 문제점에 따른 정책대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 2. 아동안전 실태

### 가. 안전사고 발생현황 및 국제비교

통계청의 『사망원인통계연보』에 의하면, 우리나라에서는 연간 2,500명이 넘는 아동들이 15세 이전에 사고로 생명을 잃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990년대 이후의 통계를 볼 때, 0~14세 아동의 전체 사고사망수 자체는 약간 줄어드는 것으

우리나라 아동의 사고사망률은 0~9세 아동인구 10만명당 무려 30명이나 되는 것으로 나타나 일본의 10명, 영국의 7명에 비해서 매우 높다.

로 나타나고 있으나, 아동인구 10만명당 사망률은 1990년 25명에서 1995년 24명으로 별 차이를 보이지 않고 있다(표 1 참조).

표 1. 0~14세 아동의 안전사고 사망수(1990~1995)

	1990	1991	1993	1994	1995
전체아동수(0~14세, 1,000명)	11,078	10,948	10,727	10,581	10,400
전체 아동사망자수(명)	2,804	2,730	2,573	2,560	2,543
0세	194	182	333	305	313
1~ 4세	1,057	1,044	959	903	888
5~ 9세	972	941	748	750	739
10~14세	581	563	533	602	603
아동인구 10만명당 사망수(명)	25	25	24	24	24

자료: 통계청, 『사망원인 통계연보』, 각 연도.  
 \_\_\_\_\_, 『한국통계연감』, 1996.

특히 14세 이하의 아동의 경우 연령이 적을수록 안전사고로 인한 사망률이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즉, 1~4세 아동과 5~9세 아동의 사망수는 1990년 이후 꾸준히 감소하고 있으나, 0세 아동의 사망수는 1993년 이후 급격히 증가한 것으로 보고되었고, 10~14세 아동의 사망수는 1994년 이후 약간 상승하였다.

이와 같은 아동의 사고사망률을 선진외국과 비교해 보면, 1994년 현재 0~9세 아동인구 10만명당 사망자수는 일본이 10명, 영국이 7명이지만, 우리나라는 무려 30명이나 되는 것으로 나타난다.

한편 우리나라 아동의 주요 사망원인을 살펴보면, 0세를 제외하고 1세부터 중등학교 아동까지 전 연령대에 걸쳐 교통사고로 인한 사망률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특히 일본, 영국과의 비교를 통해 볼 때 우리나라 아동의 교통사고와 익사사고 비율은 매우 높아서 안전사고로 사망한 아동 2명 중 1명은 교통사고로, 5명 중 1명은 익사사고로 사망한 것으로 나타난다(표 2 참조).

표 2. 0~9세 아동의 안전사고 사망원인의 국제비교(1994)  
(단위: 명, %)

	한국	일본	영국
아동사망수	1,958(100.0)	1,125(100.0)	404(100.0)
교통사고	970( 49.5)	410( 36.4)	195( 48.3)
화재사고	79( 4.0)	60( 5.3)	74( 18.3)
추락사고	138( 7.0)	57( 5.1)	18( 4.5)
익사사고	401( 20.5)	253( 22.5)	45( 11.1)
질식사고	238( 12.2)	225( 20.0)	29( 7.2)
중독사고	30( 1.5)	-	4( 1.0)
기타사고	102( 5.2)	120( 10.7)	39( 9.7)

1995년 현재  
안전사고로 인한  
아동부상자수는  
0~9세 아동인구  
658만 1천명의  
0.24%에 해당되는  
비율로서 아동  
10만명당 240명이  
부상당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자료: 통계청, 『사망원인통계연보』, 1994.  
보건복지제도개혁위원회, 『아동의 안전보호를 위한 종합대책(안)』, 1996. p.4.

이는 앞으로 아동안전사고를 감소시키기 위해서는 교통안전과 물놀이안전에 가장 주의를 기울여야 함을 시사해 주고 있다. 교통사고로 인한 사망아동수는 1993년 이후 점점 더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한편 안전사고로 인해 부상을 입는 아동수는 사망아동수에 비해 약 10배 정도일 것으로 추정된다. 보건복지제도개혁위원회는 안전사고로 인한 0~9세 아동부상자수를 의료보험관리공단의 요양급여 자료를 이용하여 1995년 연간 16,047명이 될 것으로 추정한 바 있다. 이는 1995년 현재의 0~9세 전체 아동인구 658만 1천명의 0.24%에 해당되는 비율로서 아동 10만명당 240명이 부상당하는 것으로 계산된다. 그러나 경미한 상해로 병원을 찾지 않고 자가치료하는 아동수를 감안한다면 실제 부상아동수는 훨씬 많을 것으로 추정된다.

특히 교통사고로 인한 부상아동수는 사망수의 약 30~45배에 이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즉, 매년 약 3만 9천명에서 5만 8천명의 아동들이 교통사고로 인하여 상해를 입는 것으로 추정된다.

아동안전의  
위험요인중 가정내  
안전사고는  
0~6세의 아동들,  
특히 인지능력이  
부족하면서도  
활발하게 움직이는  
2~3세가 가장  
위험한 연령이다.

#### 나. 연령별 아동안전 위험요인

아동안전 위험요인은 크게 옥내 혹은 옥외의 장소 및 시설요인과 물품요인으로 나뉘어진다. 장소 및 시설요인은 가정내, 보육시설, 놀이시설, 거리나 야외 등에서 아동의 안전을 위협하는 요인이고, 물품요인은 식품, 학용품, 장난감 등의 물건으로 인한 위험요인이다.

아동안전 위험요인을 연령별로 분류해 보면, 가정내 안전사고는 0~6세의 아동들, 특히 인지능력이 부족하면서도 활발하게 움직이는 2~3세가 가장 위험한 연령이다. 특히 이 시기에는 보호자의 유무가 결정적인 영향을 끼치기 때문에 이 연령층의 아동을 혼자 두는 것은 매우 위험하다.

보육시설내 안전사고는 주로 2~6세까지의 아동에게 해당되며, 시설구조의 부적합, 아동관리 소홀로 인한 자상, 골절, 화상 등의 상해가 발생하는 경우가 많다. 놀이시설내 안전사고는 3세 이상 모든 아동에게 해당되며, 특히 최근에는 롤러스케이트장내 안전사고가 많이 발생한다. 거리나 야외의 사고는 모든 연령층의 아동에게 해당되며, 특히 교통사고가 가장 심각한데, 이는 아동용 안전벨트 착용기준 미흡 및 자전거도로의 부족, 헬멧 미착용과 깊이 관련된다.

식품으로 인한 사고 역시 모든 연령층의 아동에게 해당되지만, 특히 3세 이상 아동의 집단급식시설을 통한 식중독사고, 부정·불량식품, 제조 및 유통단계에서 오염, 변질, 부패된 가공식품으로 인한 사고, 식품용기의 하자로 인한 사고 등이 보고된다. 학용품으로 인한 사고도 연필이나 크레용을 쓰기 시작하는 3세 이상 모든 아동에게 해당되며, 아동의 장난이나 부주의로 인한 위험외에도 제품에 함유된 유해성분 등에 의한 위험요인이 많다. 장난감으로 인한 사고위험 역시 영아부터 모든 연령층에 해당되는데, 품질불량, 구조 및 설계상의 하자, 도색완구의 유해원소로 인한 중금속 중독, 모의총기류 등의 판매관리 허술과 안전수칙 미준수, 법정 성능수준에 부적합한 장난감 꽃블류 등이 원인이 되고 있다.

그림 1. 연령별 아동 안전사고의 위험요인

			영아 (0세)	유아기 (1~3세)	소아기 (4~6세)	초등학교 (7~12세)	중등학교 (13~15세)
장소 및 시설 요인	옥내	가정내	■	■	■		
		보육시설	■	■	■		
	옥외	놀이시설			■	■	■
		거리·야외	■	■	■	■	■
물품요인	식품				■	■	
	학용품				■	■	
	장난감		■	■	■	■	

주: 색깔이 진할수록 아동안전위험의 정도가 높은 것임.

OECD의 소비자정책위원회는 아동안전을 위한 대책을 아동제품 또는 시설의 안전기준 제정, 아동안전사고의 관련자료 수집 및 조사연구, 안전교육 및 홍보의 세 가지 분야로 나누어 제시하고 있다.

### 3. OECD 주요국의 아동안전대책

OECD의 소비자정책위원회는 1983년에 발표한 『아동안전조치 권고안』과 1984년 아동보호를 위한 제품안전조치에 관한 보고서에서 아동안전을 위한 대책을 3가지 분야로 나누어 제시한 바 있다.

#### 가. 아동제품 또는 시설의 안전기준 제정

먼저 아동용품에 대해 중금속, 색상, 내구성, 구조, 규격, 성능, 관리방법, 취급 및 판매기준 등에 관한 규제를 하고, 각종 위해물질의 사용을 엄격히 통제하고 안전장치의 부착을 의무화 하며, 아동용 각종 시설물에는 아동의 접근 또는 사용을 방지하기 위한 각종 안전표시의 부착과 안전장치의 설치를 의무화한다.

규제방법으로는 국가가 안전기준을 구체적인 법령을 통하여 규제하는 직접적이고 강제적인 방식과 제품업자들이 스스로 안전기준을 제정해 놓고 불안정한 제품을 규제 및 추방하도록 제도적 환경을 마련해 주는 간접적이고 자율적인 규제방식을 병행하고 있다. 특히 프랑스와 호주 등의 국가들은 아동의 건강에 위해를 끼칠 가능성이 높은 광고에 대해서도 규제하고 있다.

OECD국가들은 대체로 표집된 종합병원을 정보원으로 활용하며, 수집된 자료는 아동안전정책의 우선순위 결정 및 안전기준의 제정에 사용하고, 사고예방교육 및 홍보자료로도 활용한다.

#### 나. 아동안전사고의 관련자료 수집 및 조사연구

미국이 1972년 처음으로 국립전자위해감시시스템(National Electronic Injury Surveillance System)이라는 위해정보시스템을 도입한 이래 일본, 스웨덴, 덴마크 등의 국가들도 유사한 안전사고데이터시스템을 설치하여 안전사고에 대한 정보를 수집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OECD가 자체적으로 소비자안전조치통보시스템(Notification System on Consumer Safety Measures)과 위해소비제품 관련자료수집시스템(Data Collection Systems Related to Injuries Involving Consumer Products)을 운영하고 있다.

OECD국가들은 대체로 표집된 종합병원을 정보원으로 활용하며, 수집된 자료는 아동안전정책의 우선순위 결정 및 안전기준의 제정에 사용하고, 사고예방교육 및 홍보자료로도 활용한다.

#### 다. 안전교육 및 홍보

OECD국가들은 대부분 학교와 유치원 등에서 아동안전교육을 의무화하고 있다. 자신의 안전을 전적으로 부모에게 의존하는 취학전 아동에 대한 안전교육은 주로 부모와 사회사업가를 대상으로 이루어지며, 취학아동에 대한 안전교육은 부모와 교사뿐 아니라 아동에게 직접 실시한다. 이를 위해 아동의 연령별 신체적, 정신적 성장정도에 맞추어 다양한 아동안전 교육교재를 개발·보급하고 있으며, 특히 아동안전실습장을 설치하여 현실성 있는 안전교육을 실시한다.

### 4. 정책과제

#### 가. 분야별 아동안전대책의 강화

우선 단기적으로 아동사망 원인별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는 교통사고와 익사사고를 감소시키기 위한 노력이 요구된다. 먼저 교통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초등학교, 보육시설, 놀이터 주변 등 아동의 통행이 많은 곳을 아동보호구역으로 지정하고 관련 안전표지 및 시설물의 설치·운영에 관한 엄격한 기준을 제정하고 통제·관리해야 한다. 그리고 아동용 안전시트와 안전벨

---

트의 착용을 의무화하고, 제작시 철저한 품질검사가 이루어지도록 한다. 간선도로 및 주택가 도로에서의 자전거 교통안전표지를 증설하며, 미국, 호주 등 선진국에서 의무화했거나 권장하고 있는 아동의 자전거 헬멧착용제도를 도입한다. 실효성 있는 교통안전교육을 위하여 실습위주의 교육을 실시한다.

둘째, 익사사고를 줄이기 위해서 사고위험지역에 위험내용과 정도를 설명해 주는 경고표시판을 설치하도록 하고, 안내방송과 안전요원들을 배치하여 지도·감독을 강화해야 한다. 또한 각종 구조장비를 확충하고, 망루대와 부표를 설치하며, 비상시 활용할 수 있는 응급후송차량과 전문성 있는 인명구조원 및 의료진 등을 체계적으로 확보한다.

셋째, 놀이시설 안전을 위한 규제를 강화하기 위해 놀이터 및 놀이시설의 설계, 제작, 시공, 관리에 관한 안전관련 사항을 종합적으로 규제할 수 있는 근거법령을 마련하고, 규격기준을 제정한다. 특히 롤러스케이트장에 대한 감독을 충실히 하여 충격흡수시설을 보완하고 보호장비의 구비 및 착용을 의무화한다.

넷째, 선진외국에서 활용되고 있는 아동안전용품, 예를 들면 젓가락이 아동의 부엌 출입통제를 위한 적외선 경보장치, 열탕 주의표시가 된 수도꼭지, 낙하방지 표시를 부착한 조리대 등과 같은 안전용품의 개발이 시급하다. 이를 위해 아동용품 개발업체를 정부차원에서 적극 지원하여 제품개발을 권장하고, 일반 아동용 시설이나 물품을 생산판매하는 업체들도 아동안전을 위한 제품개발에 적극 가담할 수 있도록 배려한다.

다섯째, 완구 및 아동용품에 대한 품질검사기준을 강화하고 철저히 단속해야 한다. 안전마크제도를 도입하는 것도 바람직한 대안이 될 수 있을 것이다.

#### 나. 법적·제도적 정비방안

첫째, 부처별 아동안전 관련법규를 보완하거나 새로운 법령을 제정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특히 각 부처별로 시행되고 있는 아동안전 관련법령을 하나로 일괄되게 묶어 정리할 수 있는 상위법, 예를 들면 『아동안전특별법』과 같은 법령을 제정하는 방법도

아동안전사고에 대한 대책을 분야별로 강화하되 우선 단기적으로 아동사망 원인의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는 교통사고와 익사사고를 감소시키기 위한 노력이 요구된다.

부처별 아동안전  
관련 법규를  
보완하거나 새로운  
법령을 제정하는  
방안의 검토와  
OECD국가들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아동안전사고 관련  
자료의 수집 및  
조사연구가  
이루어져야 한다.

모색해 볼 수 있다.

둘째, OECD국가들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것과 같은 아동안전 사고 관련자료 수집 및 조사연구가 이루어져야 한다. 이를 위해 이미 선진국에서 개발된 안전사고데이터시스템을 도입하고 운영해 볼 필요가 있다. 혹은 아동안전에 대한 조사 및 연구를 전문적으로 수행할 기관을 설립하여 각종 아동안전 위험요소와 노출정도, 피해상황을 체계적으로 조사하여 정책자료로 제공하고, 아동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교육자료 및 기법을 개발·보급하는 방안도 모색해 볼 수 있다.

셋째, 아동의 안전사고를 예방하는 데에는 안전교육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특히 보호자의 안전의식이 높을수록 아동의 안전사고 발생확률은 낮아지므로 부모와 교사를 대상으로 하는 안전교육과 훈련실시를 의무화해야 한다. 또한 아동안전에 대한 범국민적 의식을 고취시키기 위해서 영상매체, 인쇄물, 공익광고 등을 이용한 각종 홍보를 실시한다.